

감정평가서

APPRAISAL REPORT

건명:	박매덕 소유물건 (2025타경13622)
의뢰인:	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
감정평가서번호:	SJ2511-01-07

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(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)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, 개작(改作), 전재(全載)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SJ감정평가사사무소

(부동산)감정평가표

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
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.

감정평가사

(인)

설진

감정평가액	육억이천오백만원정 (₩625,000,000.-)					
의뢰인	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	감정평가 목적	법원경매			
제출처	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계	기준가치	시장가치			
소유자 (대상업체명)	박매덕 (2025타경13622)	감정평가 조건	-			
목록표시 근거	귀제시목록	기준시점	조사기간	작성일		
기타 참고사항	-	2025.11.28	2025.11.19 ~ 2025.11.28	2025.11.28		
감정 평가 내용	공부(公簿)(의뢰)		사정		감정평가액	
	종류	면적(㎡) 또는 수량	종류	면적(㎡) 또는 수량	단가	금액
	구분건물	1세대 이	구분건물	1세대 하 여	- 백	625,000,000
	합계					₩625,000,000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						
" 별 지 참 조 "						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. 감정평가 개요

1. 감정평가목적

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“광운대학교”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 (월계로즈빌)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 건임.

2.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

본건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, 「감정평가실무기준」 등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 이론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.

3. 대상물건의 개요

(1) 대상물건의 내역

소재지	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7, 387-2, 387-3, 387-4, 390		
건물명	월계로즈빌 제8층 제801호		
사용승인일	2004.07.14		
용도	아파트		
면적	전유면적 (㎡)	공유면적 (주,㎡)	대지권면적 (㎡)
	75.42	52.7	30.08
공법상 제한사항	387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도로(접합), 가축사육제한구역, 상대보호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, 과밀억제권역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 387-2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, 과밀억제권역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, 387-3, 387-4, 390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, 상대보호구역, 대공방어협조구역, 과밀억제권역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		

(2)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.11.28을 기준시점으로 함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3)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

실지조사(2025.11.19~2025.11.28)를 통하여 사전자료수집, 공부발급,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, 가격수준 등을 확인함.

4.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

(1)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

본건은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“시장가치”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.

(2)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

본건에 대한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.

5. 그 밖의 사항

- ① 본건의 호별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현관문의 호수 표기 등에 의거하였음.
- ②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간접확인 하였으며,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II. 감정평가액 산출근거

1. 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(1)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,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음.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6조(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)

감정평가법인등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.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(2)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

위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(거래사례비교법) 후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괄로 거래되며 수익성부동산이 아닌 대상물건의 특성 등의 사유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2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주된 방법 외 다른 감정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음.

(3) 일괄·구분·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였으며, 구분소유건물은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,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, 귀 요청(평가목적)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토지건물배분비율에 의거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람.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2. 거래사례비교법의 의한 시산가액

(1) 거래사례의 선정

본건 인근의 거래사례로, 본건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<사례#1>을 선정함.

사례	소재지	건물명	층수	전유면적 (㎡)	대지권 (㎡)	거래금액 (천원)	자료 출처	거래시점
								사용승인일
#1	월계동 38*-*외	000	제7층	84.91	26.83	680,000	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2024.12.07
								2006.06.14
#2	월계동 94*	000	제15층	84.8437	42.65	680,000	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2024.10.12
								2005.05.23
#3	월계동 93*	000	제17층	81.8788	35.4101	657,000	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2024.04.16
								2002.05.13
#4	월계동 94*	000	제11층	84.939	45.603	670,000	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2025.02.28
								2005.10.27

(2) 사정보정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(1.00).

(3) 시점수정

－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“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”를 활용하여 산정함.

－ 월별 매매가격지수

(2025.03 = 100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2024년	98.43	98.25	98.12	98.08	98.06	98.22	98.61	99.26	99.84	100.09	100.22	100.23
2025년	100.12	100.03	100.00	100.00	100.04	100.43	100.92	101.10	101.34	101.72	-	-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- 시점 수정치 산출
- ▶ 거래사례의 매매 당시 가격지수 : 100.22 (2024.11)
 - ▶ 본건 기준시점 당시 가격지수 : 101.72 (2025.10)
 - ▶ 시점수정치 : $101.72/100.22 \approx 1.01497$

(4) 가치형성요인비교

구분		격차율		비고
조건	세항목	사례	대상	
단지 외부요인	대중교통의 편의성, 교육시설 등의 배치, 도심지 및 상업,업무시설과의 접근성, 차량이용의 편리성,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, 자연환경 등	1.00	1.00	본건이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하나 주위환경 등에서 우세하여 종합적으로 대등함.
단지 내부요인	시공업체의 브랜드,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,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,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, 단지내 면적구성, 단지내 통로구조 등	1.00	0.97	본건이 단지내 총세대수 등에서 열세함.
호별 요인	층별 효용, 향별 효용, 위치별 효용,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, 내부 평면방식,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	1.00	1.05	본건이 규모 등에서 우세함.
기타 요인	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	1.00	1.00	유사함.
누계		1.019		$1.00 \times 0.97 \times 1.05 \times 1.00$

(5) 비준가격 산정

거래사례 (원)	사정보정	시점수정	가치형성 요인비교	면적비교	산출가격 (원)	결정가격 (원)
680,000,000	1.00	1.01497	1.019	75.42 /84.91	624,689,189	625,000,000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3. 그 밖의 사항

(1) 인근 부동산 가격조사

가격수준	본건 유사 인근 아파트는 6억원 ~ 6억5천만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.
------	--

(2) 인근 평가전례

[출처: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]

사례	소재지	건물명	층수	전유면적 (㎡)	대지권 (㎡)	감정평가액 (천원)	평가 목적	기준시점
								사용승인일
#1	월계동 38*-*외	000	제9층	74.74	23.61	600,000	가격 자문	2024.10.30
								2006.06.14
#2	월계동 92*	000	제14층	114.816	36.787	900,000	경매	2025.04.18
								2000.04.26

(3) 인근지역 매각가율 통계

[출처: 대법원]

지역	기간	종별	매각가율(%)	비고 (매각건수)
서울특별시 노원구	2024.11~2025.10	아파트	88.1	- (144건)

III.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

1. 감정평가액 : 625,000,000원

2. 결정의견

상기 참고가격자료에 의해 시산가격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격에 중점을 두고
기타 제 가격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.

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 및 용 도	용도지역 및 구 조	면 적 (㎡)		감정평가액	비 고
					공 부	사 정		
1	1동의 건물의 표시							
	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	387, 387-2, 387-3, 387-4,	공동주택 (아파트)및 제1종근린 생활시설	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0층				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(아파트), 제2종근린 생활시설
	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53-17	390 월계 로즈빌		지하2층 지하1층 1층 2층~8층 각층 9층 10층	640.81 690.68 421.81 279.73 279.16 255.48			
	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			8층 801호 철근콘크리트조	75.42	75.42	625,000,000	비준가격 (공용면적 포함)
	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							
	토지의 표시							
	1.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	387	대		589			
	2. 동소	387-2	대		100			
	3. 동소	387-3	대		108			
	4. 동소	387-4	대		123			
	5. 동소	390	대		78			
	대지권의 종류			1,2,3,4,5. 소유권				

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지 목 및 용 도	용도지역 및 구 조	면 적 (㎡)		감정평가액	비 고
					공 부	사 정		
	대지권의 비율			1,2,3,4,5.	30.08 ----- 998	30.08 토지·건물 토 지 : 건 물 :	배분내역 375,000,000 250,000,000	
	합 계						₩625,000,000.-	
			이	하	여	백		

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(1) 위치 및 주위환경 | (2) 교통상황 | (3) 건물의 구조 | (4) 이용상태 |
| (5) 설비내역 | 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| (7) 인접 도로상태 등 | |
| 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| (9) 공부와의 차이 | 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 | |

(1) 위치 및 주위환경

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"광운대학교"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, 주변은 아파트, 다세대·연립주택, 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.

(2) 교통상황

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,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(광운대역, 1호선·경춘선)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.

(3) 건물의 구조

철근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8층 제801호로서,
외벽 :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,
창호 : PVC계열 합성수지창호 등으로 마감됨.

(4) 이용상태

주거용(아파트)로 이용중인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확인됨.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간접확인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.

(5) 설비내역

개별난방설비, 위생 및 급배수설비, 승강기설비,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.

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- (1) 위치 및 주위환경
- (2) 교통상황
- (3) 건물의 구조
- (4) 이용상태
- (5) 설비내역
- 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
- (7) 인접 도로상태 등
- 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- (9) 공부와의 차이
- 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

5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.

(7) 인접 도로상태등

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 4~6m내외 포장도로,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,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.

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
387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18-11-01)(월계생활권중심지구), 도로(접함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6-10-25)(광운대학교,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대상자: 외국인 등, 용도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지정기간: 2025. 8. 26.~2026. 8. 25.)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용도: 아파트/지정기간: 2025. 10. 20.~2026. 12. 31.),

387-2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18-11-01)(월계생활권중심지구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대상자: 외국인 등, 용도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, 지정기간: 2025. 8. 26.~2026. 8. 25.)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용도: 아파트/지정기간: 2025. 10. 20.~2026. 12. 31.),

387-3, 387-4, 390번지: 도시지역, 준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(2018-11-01)(월계생활권중심지구), 가축사육제한구역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(2016-10-25)(광운대학교,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)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77-257m)<군사기지

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- (1) 위치 및 주위환경
- (2) 교통상황
- (3) 건물의 구조
- (4) 이용상태
- (5) 설비내역
- (6)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
- (7) 인접 도로상태 등
- (8)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
- (9) 공부와의 차이
- 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및 군사시설 보호법>, 과밀억제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
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대상자: 외국인 등, 용도: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
다세대, 지정기간: 2025. 8. 26.~2026. 8. 25.)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용도:
아파트/지정기간: 2025. 10. 20.~2026. 12. 31.).

(9) 공부와의 차이

-

(10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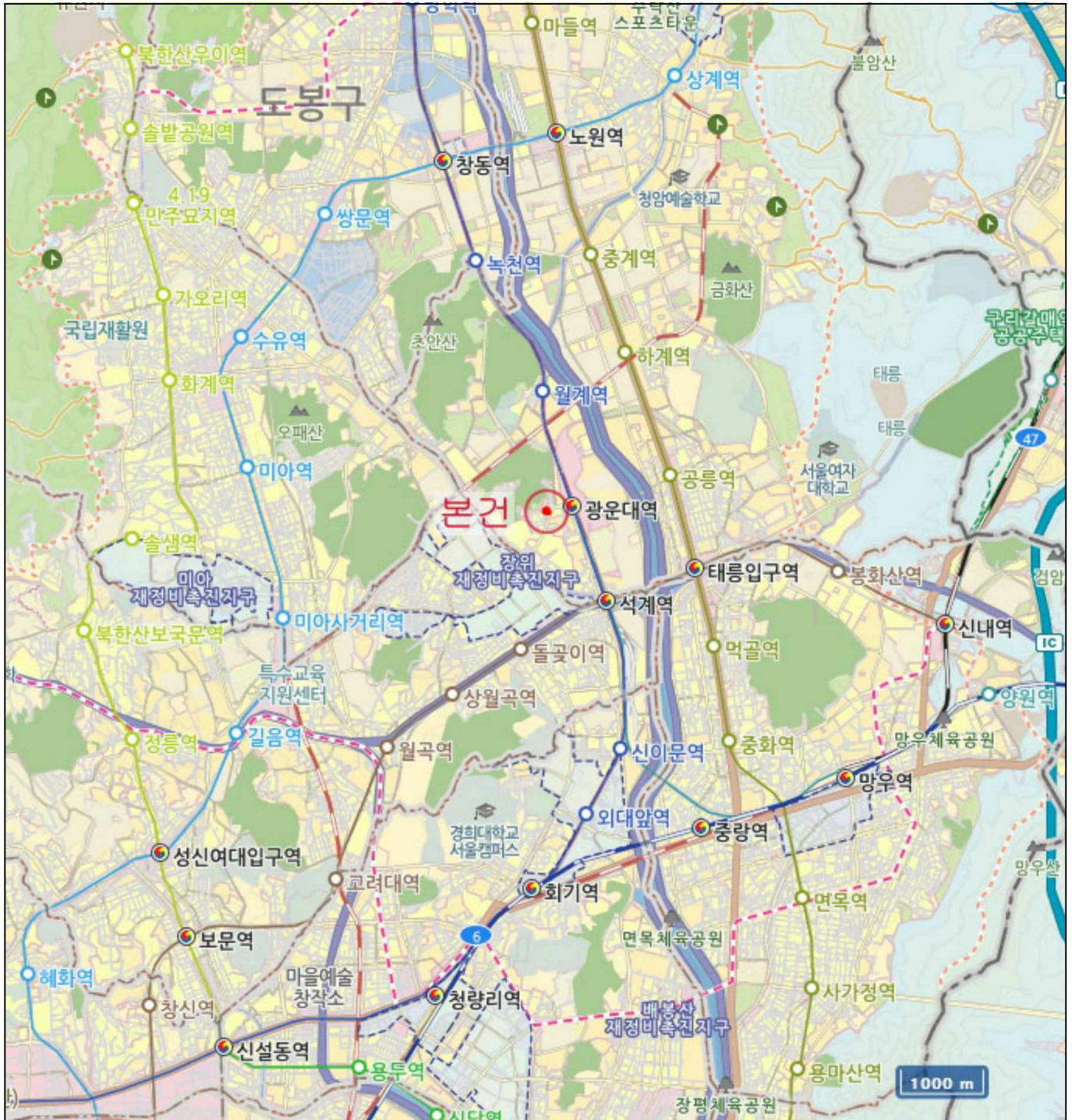
임대관계 미상임.

광역위치도



소재지

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7외 월계로즈빌 8층 801호



위 치 도



소재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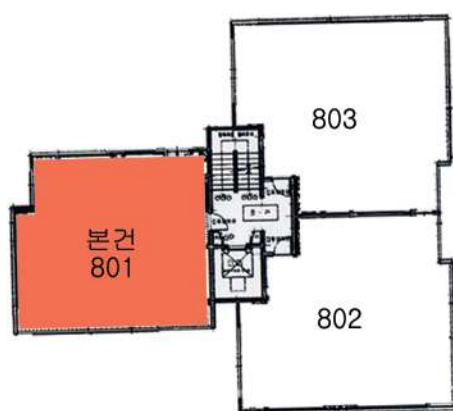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7외 월계로즈빌 8층 801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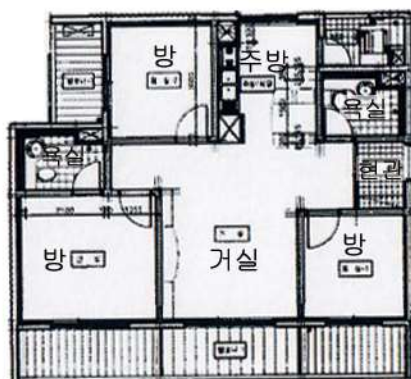
내부구조도

축척 NO SCALE

호별배치도



내부구조도



본건(월계로즈빌 8층 801호)

사 진 용 지



본건동



본건동

사 진 용 지



본건



본건 주위 전경 - 북동측에서 촬영

사 진 용 지



본건 주위 전경 - 남동측에서 촬영



본건현관문

사 진 용 지



공동현관문



지하주차장출입구